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구 미 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재)경북신용보증과 협약을 통하여 출연코자 함.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출연기관 : (재)경북신용보증

(2) 출연예정액 : 금400,000천원(2016년과 동일)

(3) 출연금사용처 : 보증대출금 미상환액 및 약정이자 대위변제

나. 주요사업 : 소상공인 특례보증

(1) 사업기간 : 2017년 3월~보증 한도 까지

(2) 지원대상 :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
건설·운수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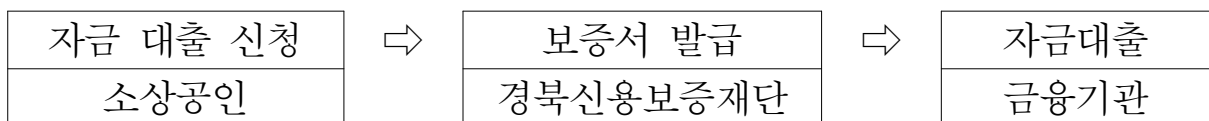
(3) 지원한도 : 2천만원 이내

(4) 상환방법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5) 심사기준 :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용 심사기준표에
의거 항목별 저촉여부 심사 후 특례보증

(6) 지원방법

- 시 출연금 4억원의 10배수인 40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



(7)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별	계	2013	2014	2015	2016
출 연 금	1,100	100	200	400	400
보증금액	10,497	1,000	2,000	4,000	3,497
보증업체수	637	66개소	119개소	249개소	203개소

<2016.8.31. 기준>

다. 출연 필요성

(1)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간접적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활동 안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재)경북신용보증재단 현황

[재)경북신용보증재단 현황

(1) 기관명(주소) : (재)경북신용보증재단(구미시 이계북로 7)

(2) 기 관 소 개

-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설립근거

- 법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조례 :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주요기능

- 창업 및 경영개선 관련 상담
- 창업정보제공 : 관내 업소분포, 유망업종, 창업트랜드
- 창업적성 검사 및 사업성 평가
- 인허가 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등
-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상담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보증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소관 실 · 과		과학경제과
입 안 자	과 장	백 인 엽
	담 당	강 정 숙
	담 당 자	김 보 우 (480-6183)